남악 오룡지구 39블록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하여 정부에 지침에 따른 견본주택 운영(방문관람, 서류접수, 공급계약체결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남악 오룡지구 39블록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https://www.prugio.com/ht/2021/oryong/)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무순위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또는 대리인 외 동반 1인만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시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예약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며, 홈페이지 및 당사의 안내에 따라 예약된 일자, 시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이점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유증상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 견본주택 입장 전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 백신 미 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및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24시간 이내) 지참 고객(동반 1인 포함)에 한해 입장 가능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손소독제, QR코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분양상담전화(1800-4994),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24.(목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050**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28.(화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994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무안군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무순위 청약당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무안군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03월 02일(수요일)	03월 07일(월요일)	03월 08일(월요일) ~03월 09일(화요일)	03월 17일(목요일) ~ 03월 18일(금요일)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당사 견본주택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1.11.16.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전매)체결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후 구입하신 전자 수입인지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시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남악신도시 오룡택지지구 39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층 6개동 총 380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68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 주택	2022910050	01	084.9967A	84A	46	101동	203, 303, 403, 503, 603, 1201, 1603, 2003
						102동	202, 801, 1101, 1202, 1402
						103동	102, 202, 303, 402, 403, 503, 603, 703, 1902, 2002
						104동	102, 303, 502, 703, 1203
						105동	102, 202, 302, 602, 1101, 1201, 1202, 1302, 1402
						106동	602, 701, 802, 901, 902, 1402, 1601, 1702, 1902
		02	084.9904B	84B	14	103동	104, 201, 204, 501, 504, 701
						104동	304, 801, 1101, 1201, 1401
						105동	504, 1204
						106동	404
		03	084.9370C	84C	6	105동	403, 703
						106동	303, 1103, 1903, 2003
		04	084.9867D	84D	2	101동	302, 1002
	합 계				68	-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 /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가격**

- 계약금 및 계약금 납부계좌, 납부 방법

계약금	납부시기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금액 10%	**계약 시**	광주은행	1107-021-305484	아시아신탁(주)

※ 무순위 공급의 경우 계약 시 **계약금(공급금액 10%) 완납 후 계약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동. 호수별로 계약금이 상이 하오니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101동 15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30702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중도금, 잔금 납부 일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무안군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남악 오룡지구 39BL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남악 오룡지구 39BL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동 주택(남악 오룡지구 39BL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단, 동주택(남악 오룡지구 39BL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이 아닌 **다른 주택(남악 오룡지구 40BL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은 당첨 및 부적격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가능**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무안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당첨자 제출서류

- 서류제출 일시 : 2022년 03월 08일(화요일) ~ 09일(수요일) 10:00시 ~ 17:00시 [서류제출일 및 시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사전 서류 제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출생일)부터 ~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출생일)부터 ~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		해외체류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 등본(전체포함)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까지 지정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2년 03월 17일(목요일) ~ 18일(금요일) 10:00시 ~ 17:00시 [서류제출일 및 시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자격검증서류 일체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인감도장	본인	
		○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2.02.24.(목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2022.03.22.(화요일) 10:00 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주택형별 세부 추첨·계약 시간 및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2022.03.22.(화요일)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어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

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디씨에이엠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파레나	
	주식회사 대우건설	
법인등록번호	134511-0478683	110111-2137895
	201111-0054520	
	110111-2137895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5번길 25, 1층 111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49번길 12, 2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 본 분양물건은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디씨에이엠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서 시행·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디씨에이엠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디씨에이엠피에프브이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디씨에이엠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31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수입금계좌, 발코니 확장대금 및 옵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포함)의 명의는 디씨에이엠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업무수탁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2.28.)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t/2021/oryong/)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3

■ 분양 문의 : 1800-4994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